33. 크로아티아(Croatia)

1. 근거법 제정 시기

○ 최초법 : 1922년

○ 현행법 : 1998년 연금보험법('99년 시행), 1998년 직업병, 1999년(가입기간), 2008년(보험료), 2013년(연금보험), 2013년(보험료의 징수), 2013년(직업재활), 2014년(강제연금), 2014년(자발적 연금), 2014년(연금보험회사), 2014년(의학적 진단), 2016년(의무납부),2017년(강제보험료 기초)

2. 제도형태

○ 사회보험제도 및 강제개인계좌

3. 적용대상

○ 사회보험

• 제조업·상업·서비스업 종사자, 자원봉사자, 견습생, 특정 간병인, 공무원, 공공부문 근로자, 군인, 경찰, 법조인, 임시 계약 근로자, 자영자(농부 포함)

○ 강제개인계좌

• 2002년 1월 1일 현재 40세 미만의 모든 사회보험 가입자

•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노동시장에 진입한 자

※ 2002. 1. 1. 현재 40~50세인 사회보험 가입자는 2002. 6. 30.까지 2층 제도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음. 2011. 10. 15. 이후부터, 사회보험제도에서 수령할 연금액이 2층 제도에 모두 가입하였을 경우 받을 연금보다 많을 경우, 강제개인계좌에서 적용제외 가능

4. 재원조달

○ 가입자

• 사회보험제도

- 사회보험에만 가입된 경우 소득의 20%, 사회보험과 강제개인계좌에 가입된 경우 소득의 15%
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저 소득 : 3,047.60 kunas
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고 소득 : 48,120 kunas

※ 보험료는 또한 산재 및 직업병으로 인한 영구장애 연금의 재원이 됨

• 강제개인계좌 : 총 소득의 5%

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저 소득 : 3,047.60 kunas

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고 소득 : 48,120 kunas

○ 자영자

• 사회보험제도

- 사회보험에만 가입된 경우 소득의 20%, 사회보험과 강제개인계좌에 가입된 경우 소득의 15%
- 월 기본 보험료는 자영 활동의 종류와 개인의 교육 수준에 따라 전체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대한 비율로 정함(65~100%)
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저 소득 : 3,047.60 kunas
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고 소득 : 48,120 kunas

※ 보험료는 산재 및 직업병으로 인한 영구장애 연금의 재원이 됨

• 강제개인계좌 : 총 소득의 5%

○ 사용자

• 사회보험제도 : 미적용. 단, 위험하거나 건강상 유해한 직업일 경우 적용

• 강제개인계좌 : 미적용. 단, 위험하거나 건강상 유해한 직업일 경우 적용

○ 정 부

• 사회보험제도

- 군인, 경찰, 법조인, 의회의원, 정부 공무원, 장애를 가진 참전용사에 대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지급

• 강제개인계좌 : 없음(None)

5. 급여종류별 수급 요건

○ 노령연금

• 노령연금(사회보험제도)

- 가입기간 15년 이상의 65세 남성 혹은 62세 여성
- 여성의 경우 2030년 65세에 도달할 때까지 수급연령이 해마다 3개월씩 증가
- 남성, 여성 모두 퇴직 연령이 2038년 67세에 도달할 때까지, 2031년부터 연간 3개월씩 증가
- 근로시간의 50% 미만으로 시간제 근무를 하는 경우에 한해 근로를 계속할 수도 있음
- 장기연금(Long Service pension) : 가입기간 41년 이상의 60세 도달자
- 조기연금 : 가입기간 35년 이상의 60세 남성 혹은 가입기간 32년 이상인 57세 여성

· 여성 수급연령 상향 : 2030년 60세에 도달할 때까지 수급연령이 해마다 3개월씩 증가

· 여성 최소가입기간 연장 : 2030년에 35년에 도달할 때까지 해마다 3개월씩 증가

※ 조기연금 수급연령은 남성, 여성 둘다 2038년에 62세 도달할 때까지 2031년부터 매해 3개월씩 증가

- 연기연금 : 노령연금 수급연령 기준으로 5년까지 연기 가능
- 보충연금 : 사회보험제도의 연금만 수령하는 사람에게 지급
- 해외송금가능

• 노령연금(강제개인계좌)
- 사회보험 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여야 함
- 해외송금가능

○ 장애연금

• 일반장애연금(사회보험제도)
- 65세 전 발생한 영구적인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전부 혹은 영구적으로 상실했는지 여부로 진단
- 20세 이후* 근로기간 중 가입기간이 33.3%이상인 자. 다만, 산재 혹은 직업병으로 인한 장애일 경우 최소가입기간 요건 없음
  *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23세, 대학교 졸업자의 경우 26세 이후
- 근로활동은 중단되어야 함
- 퇴직연령에 도달하였을 경우, 장애연금은 노령연금으로 대체됨
- 해외송금가능

• 부분장애연금(사회보험제도)
- 장애가 53세 이전에 시작되고, 재활 훈련에 의해서도 손실된 근로능력이 원래 수준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없으며
- 장애가 시작되기 전에 수행하던 업무와 동일한 교육수준이 요구되는 다른 직업에서, 최소 70% 이상의 일상 업무 수행이 가능한 65세 미만의 자에게 지급
- 근로기간 중 가입기간이 33.3%이상이어야 함. 다만, 산재 혹은 직업병으로 인한 장애일 경우 최소가입기간 요건 없음
- 직업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중단할 필요는 없음
- 해외송금가능

• 직업재활 및 소득보상금(사회보험제도)
- 장애가 53세 이전에 시작되고, 손실된 근로능력이 원래 수준(주 40시간 근로)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경우 지급
- 가입자는 사용자가 동일한 다른 업무에 고용될 때까지 재활기간 동안 소득보상금을 수급할 수 있음
- 만약 다른 업무가 없거나 적합하지 않을 경우, 직업재활훈련 종료 후 최대

12개월의 실업기간 까지 소득보상금 지급이 가능

* 산재나 직업병일 경우, 보상금은 최대 24개월까지 지급 가능

- 서면으로 제안된 다른 직업은 장애 발생 전에 수행한 업무에 요구되었던 같은 수준의 교육 요건을 필요로 하는 업무여야 함. 다만,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면, 한 단계 낮은 교육수준 요건을 충족해야함

• 일시장애연금(사회보험제도)

- 직업 재활훈련 이후, 58세 도달 최소 5년 전까지도 실업상태 장애인에게 지급

<장애 판정>

의학진단·직업재활·장애인고용관련 기관의 의료전문가들이 장애를 진단하고, 그 진단 결과에 대해 정부에 의해 지정된 의학박사들로 구성된 의료위원회에서 재심사 됨.

• 육체적 상해에 대한 보상수당(사회보험제도)

- 산재나 직업병으로 인해 신체 또는 장기의 일부가 30% 이상 상실 혹은 손상된 경우에 지급

* 장애판정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됨

• 장애연금(강제개인계좌)

- 55세 이상으로 최소 10년 이상 강제가입기간이 있으며 사회보험에 따른 장애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지급됨
- 강제개인계좌와 사회보험 제도의 부분장애연금의 합은 사회보험제도의 일반장애연금보다 많아야 함
- 부분장애연금은 지급되지 않음

○ 유족연금

• 유족연금(사회보험제도)

- 사망자가 연금 수급자 또는 직업재활급여 수급자이면서 보험료 납부기간 5년 혹은 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한 경우이거나 장애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

※ 가입자의 사망이 산재나 직업병으로 인한 경우, 최소가입기간 규정은 미적용

- 유족은 50세 이상의 미망인이나 홀아비, 50세 미만이고 적격한 자녀가 있는 경우. 다만 장애가 있을 경우, 연령제한은 없음

※ 45세에 미망인이 되었을 경우, 50세가 되어야 수급 가능

- 자녀의 경우 15세 까지

※ 다만, 실업자인 경우 18세까지, 학생인 경우 26세까지이고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연령제한이 없음

- 사망자가 부양하였던 60세 이상의 부모(또는 영구적인 근로능력손실로 진단을 받은 60세 미만의 부모)

- 홀아비(미망인)가 영구적인 근로능력 손실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50세 미만의 홀아비 또는 미망인의 경우 재혼할 경우 급여가 중단됨

• 유족연금(강제개인계좌)
- 사망자가 55세 이상이고, 사망당시 강제개인계좌 가입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함
- 2002년 이전 및 이후 사회보험제도에 기반한 유족연금과 강제 개인계좌의 합이 사회보험제도상의 유족연금보다 많아야 함

6. 급여종류별 지급액

○ 노령연금

• 노령연금(사회보험제도)
- 연금은 전체 근로자의 평균임금 대비 본인 소득과 가입기간을 기본으로 하여 산정됨
- 사회보험제도와 강제개인계좌를 모두 가입하였을 경우, 사회보험 제도의 연금은 25%까지 감액됨
- 최저연금월액은 가입기간 매 1년당 61.94 kunas 이고, 최대연금월액은 가입기간 중 국가평균임금의 3.8배에 해당하는 금액임
- 조기연금 : 정상 수급연령보다 빨리 수급하는 경우, 수급을 앞당기는 달(month) 마다 0.15~0.34% 감액

※ 가입기간 41세 이상의 60세 도달 퇴직자는 제외

- 연기연금 : 연기하는 달(month)마다 0.15%씩 증액, 최대 9%까지
- 연금의 해외송금 가능함
- 연금액 조정 : 연금액은 매6개월마다 생계비지수 및 국가전체 평균임금과 연동하여 조정됨

• 노령연금(강제개인계좌)
- 연금액은 계좌잔고와 퇴직당시 평균 기대여명에 기반하여 산정됨
- 연금의 해외송금 가능함
- 연금액 조정 : 연금액은 매6개월마다 생계비지수 및 국가전체 평균임금과 연동하여 조정됨

○ 장애연금

• 일반 장애연금(사회보험제도)
- 연금액은 가입자의 가입기간과 장애발생 전 소득에 근거하여 산정됨
- 월 최저연금액은 가입기간 1년 당 61.94 kunas이고, 월 최고연금액은 가입기간 중 국가평균임금의 3.8배에 해당하는 금액임

• 부분 장애연금(사회보험제도)
- 일반 장애연금의 80% 지급

- 다만, 수급자가 소득활동에 종사할 경우 50% 지급
- 산재나 직업병으로 인한 장애일 경우, 소득활동을 하더라도 66.67% 지급
- 월 최저연금액은 가입기간 1년 당 61.94kunas이고, 월 최고연금액은 가입기간 중 국가평균임금의 3.8배에 해당하는 금액임
- 급여 해외송금 가능

• 직업재활 및 소득보상금(사회보험제도)
- 급여액은 부분 장애연금액과 동일함
- 다만, 산재 혹은 직업병으로 인해 발생한 장애일 경우, 가입기간 40년일 경우 지급되는 일반장애연금액과 동일함

• 일시장애연금(사회보험제도)
- 급여액은 부분 장애연금과 동일함

• 육체적 상해에 대한 보상수당(사회보험제도)
- 수당은 산재나 직업병으로 인한 장애 정도에 따라 다름
- 연금액 조정 : 연금액은 매 6개월 마다 생계비지수 및 국가전체 평균임금과 연동하여 조정됨

• 장애연금(강제개인계좌)
- 연금액은 사회보험의 일반장애연금과 강제개인계좌 잔고 및 가입기간에 따라 산정됨
- 다만, 가입자가 55세 미만이거나 연금액의 합이 가입자가 사회보험제도에만 가입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일반장애연금액보다 적을 경우 강제개인계좌의 기금은 크로아티아 연금보험기관으로 이관하여 사회보험제도의 일반 장애연금을 지급함

○ 유족연금

• 유족연금(사회보험제도)
- 급여액은 사망자가 수급자격이 있거나 수급하고 있는 장애연금 또는 노령연금(70～100%)과 유족의 수에 따라 결정됨
- 유족연금액 산정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은 21년임
- 월 최저연금액은 가입기간 1년 당 61.94 kunas이고, 월 최고연금액은 가입기간 중 국가평균임금의 3.8배에 해당하는 금액임
- 급여 해외송금 가능
- 연금액 조정 : 연금액은 매 6개월 마다 생계비지수 및 국가전체 평균임금과 연동하여 조정됨

• 유족연금(강제개인계좌)
- 만약 사회보험제도의 유족연금과 사망자의 강제개인계좌로부터 지급받는 연금액의 합이 사망자가 사회보험제도에만 가입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혹은 받고 있던 금액보다 적을 경우

- 강제개인계좌의 기금은 크로아티아 연금보험기관으로 이관하여 사회보험 제도의 유족연금만을 지급받게 됨
- 다만, 두 연금액의 합이 더 많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

7. 관리운영기관

○ 사회보험제도

• 노동연금제도부(Ministry of Labor and Pension System)
  - 전반적인 법률 감독
  - www.mingorp.hr
• 재경부(Ministry of Finance)
  - 재정 감독
  - www.mfin.hr
• 크로아티아 연금보험기관(Croatian Pension Insurance Institute)
  - 연금 및 급여 관리
  - www.mirovinsko.hr
• 의학진단, 직업재활, 장애인고용 기관(Institute for Medical Assessment, Occupational Rehabilitation, and Employ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)
  - 장애판정 업무 관리
  - www.zosi.hr
• 국세청
  - 재경부 관할 기여금 관리
  - www.porezna-uprava.hr

○ 강제개인계좌

• 노동연금제도부(Ministry of Labor and Pension System)
  - 전반적인 법률 감독
  - www.mingorp.hr
• 크로아티아 재정서비스 감독기관(Croatian Financial Service Supervisory Agency)
  - 재정 감독
  - www.hanfa.hr
• 가입자 중앙 등록청(Central Registry of Affiliates)
  - 강제연금기금의 가입자관리, 개인계좌관리 및 기금관리
  - www.regos.hr
• 연금보험회사(Pension insurance companies)
  - 강제개인계좌의 급여 관리

<2018년 ISSA 자료>